

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.3%(1단계) 달성,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

<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>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(수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」을 심의·확정하고 「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」을 논의했습니다.

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

□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「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.

○ 정부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.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, 13.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.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.5만명의 86.3% 수준입니다.

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

□ 아울러, 「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의 3단계로,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·관계부처·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「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」도 논의했습니다.

○ 실태조사 결과* 민간위탁은 ①사무·운영실태가 다양하고, ②대부분 법령·조례에 근거하며,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,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,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.

* 위탁사무 10,099개, 수탁기관 22,743개, 종사자 195,736명, 예산 79,613억원

-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·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,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.

□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

○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,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*가 있었습니다.

*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.5%에 불과

○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,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『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』을 상반기 중 마련·시달하겠습니다.

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

○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,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, 비효율성,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

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
○ 이에, 개별 기관 별로 국내·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한편,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'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'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,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(10여명 내외)의 내·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

③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

○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(안)」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,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,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■ 불임 발체 — 민간위탁 운영 실태 (2018년 전수실태조사, 고용노동부)

- (민간위탁 사무) 총 10,099개로 일반행정, 공공질서, 교육, 환경, 사회복지, 해양수산, 교통물류, 과학기술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
- (수탁기관 및 종사자) 22,743개의 민간 기업, 전문협회 등 비영리 단체,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부문에서 195,736명의 노동자들이 수행
- (예산) 관련 예산은 총 7조 9,613억원으로 '18년 정부재정(429조)의 1.86%에 해당
- (자치단체) 위탁사무의 87.2%(8,807개), 예산의 65%(5.2조) 수행 —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의 96.3%가 조례에 근거
- 사회복지사무가 47.2%(4,769개)로 가장 많고, 문화·체육·관광 9.2%, 보건 7.9%, 환경 6.6%, 교육 5.3% 순
- 위탁형식은 경쟁위탁 58%(3,750개), 수의계약 29.1%(1,878개), 법정위탁 12.9%(833개)
- 수탁기관은 비영리(48.2%)와 사회적 경제 기업(5.6%)이 절반 이상
-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상시·지속적 업무(92.8%)이나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(75.5%)

< 용역(1단계)과 민간위탁(3단계)의 차이 >

◆ 용역과 민간위탁의 전환 문제는 정책의 성격과 대상이 매우 상이

- 용역(1단계)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"전환을 전제"로 전환제외 여부, 전환방식, 채용방법, 임금체계 등을 협의
- 민간위탁(3단계)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(직접 수행 VS 민간위탁)의 변경에 관한 《정책적 판단》이 선결

⇒ 즉, 용역의 전환은 기관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나,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의 타당성·적정성을 검토

※ 이 문서는 보도자료 원문(총 22쪽) 중 민간위탁 관련 부분의 발체임. 정규직 전환 부문별 실적표, 유통산업 정책방향, 판단기준 사례 등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. 출처: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.